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(주철현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○ '해운항만업'의 정의에 예선업과 도선업을 추가하여 예선업과 도선업에 대한 금융·행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함(안 제2조제2호 라목 및 마목 신설).

Ⅱ. 검토의견

○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병 섭)